

# 이천 부발역 에피트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4.08.07.)의 내용 중 일부를 2024.08.14. 일자로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1. (2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 관련

변경 전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변경 후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7.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2. (9p)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드레스룸특화 선택3 84A, 84C 공급금액 관련

변경 전 : 3,600,000 (단순 기호 오탈자)

변경 후 : 3,600,000

옵션 품목		세부 내용	84A	84B	84C	84D	
인테리어	드레스룸 특화	선택1	벽판넬조명선반+서랍장	2,450,000	2,100,000	2,450,000	2,100,000
		선택2	벽판넬조명선반+서랍장 + 의류관리기(삼성 DF18CB8700CR)	3,700,000	3,350,000	3,700,000	3,350,000
		선택3	벽판넬조명선반+서랍장 + 의류관리기(엘지 S3MFB)	3,600,000	3,250,000	3,600,000	3,250,000

84A	84B	84C	84D
2,450,000	2,100,000	2,450,000	2,100,000
3,700,000	3,350,000	3,700,000	3,350,000
3,600,000	3,250,000	3,600,000	3,250,000

3. (20, 26p) 자격검증 서류 관련

‘추가서류’ 추가 :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4. (32p) 부적격 통보를 받은 세대의 해당서류 관련

변경 전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변경 후 : 해당 서류 삭제

5. (33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2호 관련

변경 전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 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변경 후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 여부
민영	경기도 이천시 거주자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8.07.(수)	2024.08.19.(월)	2024.08.20.(화)	2024.08.21.(수)	2024.08.27.(화)	2024.08.29.(목) ~2024.08.31.(토)	2024.09.07.(토) ~2024.09.09.(월)

공식 홈페이지 <https://brand.hldni.com/icheonbubal/>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7.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 (12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예치금	이천시 또는 경기도 200만원 / 인천시 250만원 / 서울시 300만원						-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부모, 장인장모, 사위사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와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 (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판단합니다. (※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판단합니다.)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 일'을 기준 주택 소유로 판단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 :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릅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brand.hldni.com/icheonbubal/>)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합니다),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을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 ①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 ②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 ③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인정이 불가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이 불가합니다.
  -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상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전환 이후 청약예금 ▶ 청약저축 재전환 불가)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지역/기타지역 전입일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전입 시 가능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0	0	0	0	0	0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국가공공자 등, 장애인)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아파트 공급을 위한 주요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과 관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제반 법령이 우선합니다.
- 개정된 내용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II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8.07.(수)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이천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	서류 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8.19.(월)	2024.08.20.(화)	2024.08.21.(수)	2024.08.27.(화)	2024.08.29.(목) ~ 2024.08.31.(토)	2024.09.07.(토) ~ 2024.09.09.(월)
방법	- PC·모바일 :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 청약홈	- 이천 부발역 에피트 견본주택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82-5		

- ※ 서류접수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예비입주자의 추첨 및 계약기간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 (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합니다.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청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청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지속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 및 위임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공급대금 6억 이상 세대의 경우 공급계약 체결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정부 수입인지(분양계약, 발코니확장, 추가선택품목 해당)의 구매는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에서 일괄 구매 후 발급할 예정이므로, 계약자 본인은 별도 안내 전 정부 수입인지를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거래가(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 II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거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이천시 주택과 - 24555호(2024.08.0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을 아미리 737-6번지 일원
- 총 규모 : 아파트 671세대, 오피스텔 32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 지상 2층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4층 ~ 지상 35층, 7개동, 총 67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특별공급 203세대 [ 기관추천 : 65세대, 다자녀가구 : 31세대, 신혼부부 : 58세대, 생애최초 : 31세대, 노부모부양자 : 18세대 포함 ]

입주예정시기 : 2028년 05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공급대상 (민영주택) (단위 : m<sup>2</sup>, 세대수)

주택 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자	계		
2024 000313	01	084.7415A	84A	84.7415	25.6533	110.3948	57.7764	168.1712	26.0961	339	33	16	30	16	10	105	234	13
	02	084.5144B	84B	84.5144	26.3056	110.8200	57.6216	168.4416	26.0262	76	7	3	6	3	2	21	55	3
	03	084.7275C	84C	84.7275	26.5304	111.2579	57.7669	169.0248	26.0918	64	6	3	5	3	1	18	46	2
	04	084.4373D	84D	84.4373	27.4013	111.8386	57.5691	169.4077	26.0025	192	19	9	17	9	5	59	133	3
합계										671	65	31	58	31	18	203	468	21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약식 표기)		84A	84B	84C	84D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3	1	1	2	7
	장기복무 제대군인	3	1	1	2	7
	10년 이상 복무군인	3	1	1	2	7
	장애인	13	3	1	8	25
	중소기업 근로자	11	1	2	5	19
	소계	33	7	6	19	6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이천시 및 경기도 (50%)	8	2	2	5	17
	서울시 / 인천시 (50%)	8	1	1	4	14
	소계	16	3	3	9	31
신혼부부 특별공급		30	6	5	17	58
생애최초 특별공급		16	3	3	9	31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0	2	1	5	18
합계		105	21	18	59	20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습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토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
						1차	2차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025.04.10	2025.10.13	2026.04.10	2026.12.10	2027.05.10	2027.10.11	입주지정일
84A	2층	13	255,265,300	327,134,700	582,400,000	10,000,000	19,120,000	58,240,000	58,240,000	58,240,000	58,240,000	58,240,000	58,240,000	203,840,000
	3층	13	255,265,300	332,934,700	588,200,000	10,000,000	19,410,000	58,820,000	58,820,000	58,820,000	58,820,000	58,820,000	58,820,000	205,870,000
	4층	13	255,265,300	338,634,700	593,900,000	10,000,000	19,695,000	59,390,000	59,390,000	59,390,000	59,390,000	59,390,000	59,390,000	207,865,000
	5~9층	65	255,265,300	344,434,700	599,700,000	10,000,000	19,985,000	59,970,000	59,970,000	59,970,000	59,970,000	59,970,000	59,970,000	209,895,000
	10~14층	65	255,265,300	350,134,700	605,400,000	10,000,000	20,270,000	60,540,000	60,540,000	60,540,000	60,540,000	60,540,000	60,540,000	211,890,000
	15~19층	65	255,265,300	355,934,700	611,200,000	10,000,000	20,560,000	61,120,000	61,120,000	61,120,000	61,120,000	61,120,000	61,120,000	213,920,000
	20~24층	65	255,265,300	361,634,700	616,900,000	10,000,000	20,845,000	61,690,000	61,690,000	61,690,000	61,690,000	61,690,000	61,690,000	215,915,000
	25~28층	40	255,265,300	364,534,700	619,800,000	10,000,000	20,990,000	61,980,000	61,980,000	61,980,000	61,980,000	61,980,000	61,980,000	216,930,000
84B	2층	3	250,278,143	320,621,857	570,900,000	10,000,000	18,545,000	57,090,000	57,090,000	57,090,000	57,090,000	57,090,000	57,090,000	199,815,000
	3층	3	250,278,143	326,421,857	576,700,000	10,000,000	18,835,000	57,670,000	57,670,000	57,670,000	57,670,000	57,670,000	57,670,000	201,845,000
	4층	3	250,278,143	332,121,857	582,400,000	10,000,000	19,120,000	58,240,000	58,240,000	58,240,000	58,240,000	58,240,000	58,240,000	203,840,000
	5~9층	15	250,278,143	337,921,857	588,200,000	10,000,000	19,410,000	58,820,000	58,820,000	58,820,000	58,820,000	58,820,000	58,820,000	205,870,000
	10~14층	15	250,278,143	343,621,857	593,900,000	10,000,000	19,695,000	59,390,000	59,390,000	59,390,000	59,390,000	59,390,000	59,390,000	207,865,000
	15~19층	15	250,278,143	349,421,857	599,700,000	10,000,000	19,985,000	59,970,000	59,970,000	59,970,000	59,970,000	59,970,000	59,970,000	209,895,000
	20~24층	15	250,278,143	355,121,857	605,400,000	10,000,000	20,270,000	60,540,000	60,540,000	60,540,000	60,540,000	60,540,000	60,540,000	211,890,000
	25~28층	7	250,278,143	358,021,857	608,300,000	10,000,000	20,415,000	60,830,000	60,830,000	60,830,000	60,830,000	60,830,000	60,830,000	212,905,000
84C	3층	2	257,295,839	330,904,161	588,200,000	10,000,000	19,410,000	58,820,000	58,820,000	58,820,000	58,820,000	58,820,000	58,820,000	205,870,000
	4층	2	257,295,839	336,604,161	593,900,000	10,000,000	19,695,000	59,390,000	59,390,000	59,390,000	59,390,000	59,390,000	59,390,000	207,865,000
	5~9층	10	257,295,839	342,404,161	599,700,000	10,000,000	19,985,000	59,970,000	59,970,000	59,970,000	59,970,000	59,970,000	59,970,000	209,895,000
	10~14층	10	257,295,839	348,104,161	605,400,000	10,000,000	20,270,000	60,540,000	60,540,000	60,540,000	60,540,000	60,540,000	60,540,000	211,890,000
	15~18층	8	257,295,839	353,904,161	611,200,000	10,000,000	20,560,000	61,120,000	61,120,000	61,120,000	61,120,000	61,120,000	61,120,000	213,920,000
	20~24층	10	257,295,839	359,604,161	616,900,000	10,000,000	20,845,000	61,690,000	61,690,000	61,690,000	61,690,000	61,690,000	61,690,000	215,915,000
	25~29층	10	257,295,839	362,504,161	619,800,000	10,000,000	20,990,000	61,980,000	61,980,000	61,980,000	61,980,000	61,980,000	61,980,000	216,930,000
	30층이상	12	257,295,839	368,304,161	625,600,000	10,000,000	21,280,000	62,560,000	62,560,000	62,560,000	62,560,000	62,560,000	62,560,000	218,960,000
84D	3층	3	253,437,617	323,262,383	576,700,000	10,000,000	18,835,000	57,670,000	57,670,000	57,670,000	57,670,000	57,670,000	57,670,000	201,845,000
	4층	3	253,437,617	328,962,383	582,400,000	10,000,000	19,120,000	58,240,000	58,240,000	58,240,000	58,240,000	58,240,000	58,240,000	203,840,000
	5~9층	15	253,437,617	334,762,383	588,200,000	10,000,000	19,410,000	58,820,000	58,820,000	58,820,000	58,820,000	58,820,000	58,820,000	205,870,000
	10~14층	31	253,437,617	340,462,383	593,900,000	10,000,000	19,695,000	59,390,000	59,390,000	59,390,000	59,390,000	59,390,000	59,390,000	207,865,000
	15~18층	28	253,437,617	346,262,383	599,700,000	10,000,000	19,985,000	59,970,000	59,970,000	59,970,000	59,970,000	59,970,000	59,970,000	209,895,000
	20~24층	35	253,437,617	351,962,383	605,400,000	10,000,000	20,270,000	60,540,000	60,540,000	60,540,000	60,540,000	60,540,000	60,540,000	211,890,000
	25~29층	35	253,437,617	354,862,383	608,300,000	10,000,000	20,415,000	60,830,000	60,830,000	60,830,000	60,830,000	60,830,000	60,830,000	212,905,000
	30층이상	42	253,437,617	360,662,383	614,100,000	10,000,000	20,705,000	61,410,000	61,410,000	61,410,000	61,410,000	61,410,000	61,410,000	214,935,000

공통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유상업선) 미포함 금액이며,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 [종합토지세(분리과세 기준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면적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 제곱미터(㎡)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변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상호정산합니다.  
(다만, 소수점 이하 면적증감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 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분양대금	1005-004-687641	우리은행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발코니 확장	1005-304-687797	우리은행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1005-304-683476	우리은행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서로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반드시 상기 예금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좌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계약 시 상기 계좌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신용카드 결제불가]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수탁자 및 위탁자, 시공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합니다. (수신여부에 대한 책임없음)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1)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식 표기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 시	2025.04.10	입주지정기간
84A	18,000,000	1,800,000	1,800,000	14,400,000
84B	17,000,000	1,700,000	1,700,000	13,600,000
84C	18,000,000	1,800,000	1,800,000	14,400,000
84D	17,000,000	1,700,000	1,700,000	13,600,000

2) 발코니 확장 시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은 상기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견본주택 현금수납불가)
- 발코니 확장 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수탁자 및 위탁자, 시공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개이며,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의 계약사항입니다.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마감재 및 제품 등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성능개선, 디자인개선, 단종 등), 특허권분쟁,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동급 수준 또는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힌지, 레일, 가구조명, 스위치 등)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합니다.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 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등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스프링클러, 천장 환기구, 에어컨 매립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수전 및 배수관 등이 외기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동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다용도실을 제외하고 별도의 배수설비 및 수전은 시공되지 않고, 배수구 위치, 배수 및 우수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레인지후드, 세대환기, 욕실 배기용 덕트가 발코니1(다용도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색상 등)이 동등 수준 이상의 제품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가 미설치되며,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과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고,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과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홍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샷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 또는 천장속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미관 저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준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가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상하 세대간 확장구간 내력벽의 연속성 및 우수관, 선홍통 등의 제거로 비확장 선택 시 생활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근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의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들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 위치와 상태,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상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 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는 천장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천장형 에어컨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옆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확장 세대의 단열을 위하여 비확장 세대 및 확장세대 측벽에 단열재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비확장세대 실사용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미계약 세대의 해당 발코니 천장 및 바닥은 상하부층의 발코니확장 여부에 따라 단열재 등이 추가로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침실1 발코니2(침실1 발코니) 및 발코니1(다용도실)을 제외하고 별도의 배수설비 및 수전은 시공되지 않고, 배수구 위치, 배수 및 우수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 허가 없이 불법 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취득세 부과 대상이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선)

1. 인테리어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옵선 품목	세부 내용		84A	84B	84C	84D	비고
현관중문(자동)	3연동 슬라이딩		2,350,000	2,350,000	2,350,000	2,350,000	- 미 선택시: 현관 날개벽 설치, - 옵선 선택시 날개벽 삭제, 신발장EP 추가
아트월 마감 특화	선택1	유럽산 세라믹타일 거실전면	2,500,000	2,600,000	2,500,000	2,600,000	- [미 선택시] 거실 전면: 포세린타일(400x800) 설치 복도 1면: 벽지 시공 (벽지 시공 위치 견본주택 확인 가능) - 84A, 84C의 복도1면은 주방쪽 1면
	선택2	유럽산 세라믹타일 거실전면+복도1면	3,350,000	4,400,000	3,350,000	4,400,000	
주방 스타일링 특화	선택1	기본 후드(침니형) : 메탈PET가구 + 세라믹타일(상판/벽)+사각싱크볼 +터치식수전+우물천장 및 우물천장 간접등(아일랜드 및 식탁 D/L 포함)	3,300,000	2,550,000	3,300,000	2,550,000	- [미 선택시] 벽면: 벽타일 시공(300*600) 주방상판: 엔지니어드스톤 기타: 일반 싱크볼, 일반수전, LPM가구 마감 천장: 84A, 84C는 평천장 시공 - 84B, 84D는 별도의 우물천장 및 우물천장 간접등(아일랜드 및 식탁 D/L 포함)이 없음 - 저소음 후드(독립형)은 별도의 옵션임
	선택2	저소음 후드(독립형) : 메탈PET가구 + 세라믹타일(상판/벽)+사각싱크볼 +터치식수전+우물천장 및 우물천장 간접등(아일랜드 및 식탁 D/L 포함)	3,400,000	2,650,000	3,400,000	2,650,000	
드레스룸특화	선택1	벽판넬조명선반+서랍장	2,450,000	2,100,000	2,450,000	2,100,000	- 미 선택시 봉타입 선반 기본설치 - 드레스룸 옵션 선택1,2,3 중 택1 - 선택2,3. 의류관리기 옵션 선택시 선반 일부 축소됨
	선택2	벽판넬조명선반+서랍장 + 의류관리기(삼성 DF18CB8700CR)	3,700,000	3,350,000	3,700,000	3,350,000	
	선택3	벽판넬조명선반+서랍장 + 의류관리기(엘지 S3MFB)	3,600,000	3,250,000	3,600,000	3,250,000	
바닥마감 특화	광폭 마루		1,300,000	1,250,000	1,300,000	1,250,000	- 미 선택시: 기본마루 설치
침실 불박이장	선택1	선택1 : 침실2 불박이장(1개소)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 미 선택시 수납장 없음 - 옵션 선택1, 선택2 각각 선택 가능 - 옵션 선택3 선택시 선택1, 선택2, 선택불가 - 선택3 교차형 불박이장 설치시 침실폭 일부 축소됨 - 84B, 84D는 교차형 불박이장 설치 불가
	선택2	선택2 : 침실3 불박이장(1개소)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선택3	선택3 : 침실2,3 교차형 불박이장(2개소)	2,700,000	해당 없음	2,700,000	해당 없음	

- 모든 옵션 품목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 84B, 84C, 940A, 1110A이며, 마감자재 사양의 경우, 84C는 84A를 따르고 84B, 940A, 1110A의 경우 84D를 따릅니다. 또한 평면에 따라 가구의 규격과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옵션 마감자재 및 제품, 이미지 일러스트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및 제품 등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성능개선, 디자인개선, 단종 등), 특허권분쟁,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등급 수준 또는 등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хин지, 레일, 가구조명, 스위치 등)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합니다.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가구용 조명의 형태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용 조명이 포함된 옵션 품목 미선택 시 해당 조명은 미설치됩니다.
- 옵션 가구가 시공되는 부위의 바닥, 벽, 천장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옵션 선택시 가구와 가구조명, 가구하드웨어는 평형별 부위별 사양, 규격, 디자인이 상이하므로 세부 사항은 옵션 계약 시 확인 바랍니다.
- 옵션 마루 바닥재는 자재의 수급 시점에 따라 마루코어재(바디재)가 변경될 수 있으며, 패턴과 색상이 균일하지 않거나 표면 텍스처, 폭, 두께가 경미하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바닥 특화 옵션 품목 선택 시 시공범위는 해당 기본 마루가 설치된 바닥 공간 일체가 텍스처 광폭 마루로 일괄 적용 및 시공됩니다.
- 바닥 실리콘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타일 및 석재류는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본 공사 시 내는 부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타일 및 석재류 요철에 의한 줄눈 마감, 평활도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벽과 거실의 세라믹타일은 모델하우스와 규격 및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줄눈 마감으로 인해 패턴이 어긋날 수 있으며, 평활도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본 품목과 옵션 품목의 상판 두께는 상이합니다.
- 아트월 마감특화 선택시 세라믹타일과 도배지와 만나는 접합부는 재료분리대가 설치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에 따라 전기설비마감자재(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콘센트류, 스위치류 등)의 개수, 타입, 배치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주택형별 사양(사이즈)이 다르며,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구동방식 등이 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전기기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옵션 품목	세부 내용		84A	84B	84C	84D	비고
전기쿡탑	선택1	3구(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엘지 BEY3GSBI	900,000	900,000	900,000	900,000	미 선택시 3구 가스쿡탑 기본설치
	선택2	3구(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삼성 NZ63T5601AK	550,000	550,000	550,000	550,000	
	선택3	3구(인덕션3구) 엘지 BEI3GQBI	1,150,000	1,150,000	1,150,000	1,150,000	
	선택4	3구(인덕션3구) 삼성 NZ63T5701AK	650,000	650,000	650,000	650,000	
전기오븐	선택1	엘지 MZ385EBTA	500,000	500,000	500,000	500,000	미 선택시 가구수납(도어)
	선택2	삼성 NQ36A6555CK	360,000	360,000	360,000	360,000	옵션 선택 시에만 해당 용도 콘센트 설치
식기세척기	선택1	엘지 DIB22S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미 선택시 가구수납(도어)
	선택2	삼성 DW60T7065SS	900,000	900,000	900,000	900,000	옵션 선택 시에만 해당 용도 콘센트 설치
냉장고 Set (냉장+냉동+김치)	선택1	엘지 냉장 BC1L2AA 냉동 BC1F2AA 김치 BC1K3AA	5,700,000	5,700,000	5,700,000	5,700,000	미 선택시 냉장고 설치공간 제공(상부장 기본설치) 옵션 선택 시에만 1구 콘센트 3개소 설치, 미선택 시 2개소 설치
	선택2	삼성 냉장 RR40C7995AP(우) RR40C7895AP(좌) 냉동 RZ34C7965AP(우) RZ34C7865AP(좌) 김치 RQ34C7945AP(우) RQ34C7845AP(좌)	5,600,000	5,600,000	5,600,000	5,600,000	

- 옵션 품목의 전자제품은 제품별로 삼성전자 또는 LG전자 중 한 개 제품만 선택 가능합니다.
- 주방 가전제품 옵션 선택 시에만 해당 용도의 1구 콘센트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 전기 쿡탑 미설치로 인한 기본 가스쿡탑 설치시 가스연결관 및 밸브 등이 노출 시공되며 점검구는 플라스틱랩 시공되고 상판 색상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미 선택 시 기본 수납장(도어 마감)이 동일 규격으로 시공됩니다.
- 전기쿡탑 옵션 선택 시에도 주방에 가스배관 및 밸브가 시공되며, 주방 상판에 가스설치를 위한 밸브 구멍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냉장고 SET 옵션 품목 미선택 시 냉장고장(상부장 또는 측면 키 큰장(일부 평형))만 설치되며, 냉장고의 종류에 따라 돌출될 수 있으며 규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SET 옵션 품목 선택 시 해당 브랜드의 냉장고 도어 색상(유리사양)은 선택 가능하며, 세대별로 위치와 도어 개폐방향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세부 사항은 옵션 계약 시 확인 바랍니다.

3. 전기/설비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옵션 품목	세부 내용		84A	84B	84C	84D	비고 (* D/L = down light의 약자)
전기 조명 특화	거실D/L, 거실간접등(등박스), 침실등, 주방사각매입등, 복도D/L, 욕실장 하부간접등		2,800,000	해당없음	2,800,000	해당없음	미 선택시 기본형 LED조명 설치되고 간접등용 등박스 삭제됨 색온도 기능 없음 : 거실D/L 디밍/색온도 기능 없음 : 거실간접등, 주방사각매입등, 복도D/L, 욕실장 하부간접등
	거실D/L, 거실간접등(등박스), 침실등, 주방사각매입등, 식탁D/L, 복도D/L, 욕실장 하부간접등		해당없음	3,650,000	해당없음	3,650,000	미 선택시 기본형 LED조명 설치되고 간접등용 등박스 삭제됨 색온도 기능 없음 : 거실D/L 디밍/색온도 기능 없음 : 거실간접등, 주방사각매입등, 식탁D/L, 복도D/L, 욕실장 하부간접등

- 옵션 선택 시에만 통합스위치 또는 대기전력 차단스위치가 디밍 또는 디밍/색온도 기능이 추가된 옵션형이 설치됩니다.(단, 84B/84D의 주방용 대기전력 차단스위치는 옵션 선택 시에도 기본형으로만 설치됩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시공되며, 개별적인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옵션 미 선택시에는 간접등 설치용 등박스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기본설치 : 전타입 거실단 천장 1개만 설치)

옵션 품목		세부 내용	84A	84B	84C	84D	비고
설비	욕실풍화	[아메리칸스탠다드] (비데일체형 양변기+반다리일체형 세면기+세면 플랫폼 +선반형 욕조수전/슬라이드바 or 선반형 레인샤워수전)	3,900,000	3,900,000	3,900,000	3,900,000	- 욕실1(공용), 욕실2(부부) 일괄선택 - 미 선택시 기본형 설치
	욕실 복합환풍기	[힘펠] 환기+온풍+제습+드라이 가능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 욕실1(공용), 욕실2(부부) 일괄선택 - 미 선택시 기본형 욕실웬(배기전용) 설치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	[경동나비엔] 헤파필터 적용. 에어모니터 포함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 미 선택시 일반 전열교환기 설치
	저소음 레인지 후드	[힘펠] 독립형 후드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 미 선택시 기본형 설치(침니형 후드)

- 욕실풍화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도기/수전류가 설치되며, 액세서리 및 욕조(공용욕실), 분리형 비데(부부욕실)는 기본 제공됩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옵션 품목 선택 여부에 따라, 기본형 환풍기와 옵션형 환풍기의 설치 위치는 달라지며, 옵션형 복합환풍기는 무선 리모콘이 제공됩니다.
-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 옵션 품목 선택 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에어모니터(이동식)가 제공되며 컨트롤러는 기본형과 다른 모델로 설치됩니다.
- 저소음 레인지 후드 옵션은 날씨 및 층수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소음이 다소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저소음 레인지 후드 옵션 선택에 따라, 덕트 및 후드캡이 추가 시공되어 외부 입면의 형태가 변경됩니다.
- 저소음 레인지 후드 작동 시, 배기 성능 향상을 위해 세대 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이 연동되어 운전됩니다.
-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 옵션 품목 선택 시, 덕트 등 필수설비가 발코니1(다용도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 옵션 품목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작동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 필터교체
- 유상옵션 금액은 옵션 미 선택시 설치되는 기본형 제품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옵션 품목		세부 내용		84A	84B	84C	84D	비고
시스템에어컨	엘지	선택1	일반형	거실+침실1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선택2		거실+침실1,2,3	7,000,000	7,000,000	7,000,000	7,000,000
		선택3	고급형	거실+침실1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선택4		거실+침실1,2,3	8,000,000	8,000,000	8,000,000	8,000,000
	삼성	선택5	일반형	거실+침실1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선택6		거실+침실1,2,3	7,000,000	7,000,000	7,000,000	7,000,000
		선택7	고급형	거실+침실1	5,250,000	5,250,000	5,250,000	5,250,000
		선택8		거실+침실1,2,3	8,250,000	8,250,000	8,250,000	8,250,000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시 유상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금액은 유상옵션 미 선택시 설치되는 기본 매립 냉매배관 2개소(거실, 침실1)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옵션 선택에 따른 배관 길이 및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제조사 및 일반형과 고급형을 혼합설치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공기청정기능 없음)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 배관은 거실(스탠드 에어컨용), 침실1(벽걸이 에어컨용) 2개소에 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는 기본 제공되는 냉매 매립배관

(거실, 침실1)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은 실(거실, 침실1 제외)에는 냉매 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추후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실내기에서 발생하는 응축수의 드레인 배관은 타입에 따라 발코니1(다용도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부 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시스템에어컨이 천장에서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계약이 불가능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골조 공사 완료 후 시스템 에어컨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기본 매립 냉매 배관(거실, 침실1) 시공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시공상의 이유로 에어컨 공사 시점에 선정된 모델로 설치되므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 완료 후 계약자 임의로 에어컨 및 실외기를 설치하여 냉방기능 등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추가할 경우, 실외기실에 실외기 추가설치(2단설치 또는 용량증설 등)는 기본 제공되는 전기용량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계약 관련 유의사항**

■ **가전 및 조명 관련**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유상옵션 품목의 경우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에너지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체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관련**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품목별 계약금이 상이하며,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공사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고, 제품사양은 견본주택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바랍니다.
- 설치 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입주자와 주택공급 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이며 견본주택에 일부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에 따라 전기설비마감자재(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콘센트류, 스위치류 등)의 개수, 타입, 배치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 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 체결 하시기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상세내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입주자 선택사항으로 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결정한 금액이며, 분양가상한제 비대상입니다.

IV

**특별공급**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공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li> <li>※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li> </ul>

구 분	내 용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b>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b> 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b>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b> 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b>모두 부적격 처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b>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합니다.)</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ul> </li> <li>•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합니다.)</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ul> </li> </ul> <table border="1" data-bbox="220 1037 1497 1350"> <thead> <tr> <th>[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th> <th>이천시 또는 경기도 거주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h>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li> </ul>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	이천시 또는 경기도 거주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	이천시 또는 경기도 거주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태아 및 입양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아를 인정받기 위한 청약신청자는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li> <li>- 임신부부의 경우 입주예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를 확인합니다.</li> <li>- 입양부부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예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li> </ul> </li> </ul>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확정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기관

구분	구분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시 발급유의사항
공통서류 (필수)	주민등록표등본(전체)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주기간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 : Y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추가서류	복무확인서	청약자	10년 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군 복무기간 명시)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차(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불필요)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③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① 지역 ▶ ② 배점기준표 ▶ ③ 미성년 자녀 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 추첨 ]

- ①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이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 된 주택 포함)은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에게 공급  
 ※ 경기도 우선공급 세대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미달된 물량이 있을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 접수 결과 미달 물량 발생 시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기도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이천시 또는 경기도 거주자는 기타지역에 배정된 세대수 내에서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우선 공급 미적용
- ②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
- ③ 미성년 자녀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⑤ 추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① 미성년 자녀수	40	4명 이상	4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② 영유아 자녀수	15	영유아 3명 이상	15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태아, 입양자녀 포함)
		영유아 2명	10	
		영유아 1명	5	
③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④ 무주택 기간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⑤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⑥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 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①, ②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③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③, ④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 ④, ⑤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⑥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서류 (필수)	주민등록표등본(전체)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 여부 확인 및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주기간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 : Y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추가서류	복무확인서	청약자	10년 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군 복무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출산증명서 또는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입양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자녀가 만 18세로 미성년이며, 미혼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 건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의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합니다.
- ※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장기복무 군인(10년 이상 : 기타지역 / 25년 이상 : 해당지역)이 청약 신청 시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V-3

신혼부부 특별공급

5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③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이며, 혼인신고일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인 분
- ④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 ① 소득구분 ▶ ② 순위 ▶ ③ 지역 ▶ ④ 미성년 자녀 수 ▶ ⑤ 추첨 ]



① 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하여야 합니다.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하여야 합니다.
3단계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하여야 합니다.
4단계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하여야 합니다.
5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 지역 ▶ ④ 미성년 자녀수 ▶ ⑤ 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이천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② 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③ 지역

- 해당지역(이천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잔여물량 시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④ 미성년 자녀 수

⑤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② 순위 판단 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 가능합니다.
- ④ 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확인 시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8.0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구분	소득금액 (단위 : 원)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15%) / 우선공급 (35%)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신생아 일반공급 (5%) / 일반공급 (15%)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 140% 이하	7,004,510 ~ 9,806,313	8,248,468 ~ 11,547,854	8,775,072 ~ 12,285,099	9,563,283 ~ 13,388,595	10,351,494 ~ 14,492,090	11,139,705 ~ 15,595,586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60% 이하	8,405,412 ~ 11,207,214	9,898,161 ~ 13,197,547	10,530,086 ~ 14,040,114	11,475,939 ~ 15,301,251	12,421,793 ~ 16,562,389	13,367,646 ~ 17,823,526
추첨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 ~	11,547,855 ~	12,285,100 ~	13,388,596 ~	14,492,091 ~	15,595,587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 ~	13,197,548 ~	14,040,115 ~	15,301,252 ~	16,562,390 ~	17,823,527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 -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자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
사업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구분	금액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홈택스)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① 재직증명서 ②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홈택스)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 등록증명	① 세무서(홈택스) ② 세무서(홈택스)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② 사업자 등록증명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①/② 세무서(홈택스)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제무재표 ③ 재직증명서 ④ 사업자 등록증명 ⑤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① ~ ③ 해당직장 ④ 세무서 ⑤ 등기소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① 위촉 및 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 세무서
전년도 또는 올해 소득이 있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 2023.01.01.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자		전년도 1월 1일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상기 내용 참조  ① 세무서(홈택스)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동산 소유현황 입증서류 (소득기준 초과인 경우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및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아래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 부동산종합증명서 [소유 부동산이 주택과 토지의 경우] / 일사편리 (kras.go.kr) -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행정복지센터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행정복지센터 -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etax.seoul.go.kr) 이용안내 > 조회, 발급 >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www.wetax.co.kr)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 행정복지센터 ② 축산업 허가증 /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를 하여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 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서류 (필수)	주민등록표등본(전체)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여부, 혼인신고일 및 7년 이내의 혼인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주기간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 : Y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추가서류	복무확인서	청약자	10년 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군 복무기간 명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출산증명서 또는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입양의 경우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생아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건분주택 방문 청약신청자(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처 : 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주민등록번호 공개체크)
-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의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합니다.
- ※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장기복무 군인(10년 이상 : 기타지역 / 25년 이상 : 해당지역)이 청약 신청 시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V-4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8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③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분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

- ① 지역
  - 해당지역(이천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잔여물량 시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② 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추첨

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서류 (필수)	주민등록표등본(전체)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 여부 확인 및 만 30세 미만 나이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주기간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 : Y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 : Y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추가서류	복무확인서	청약자	10년 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군 복무기간 명시)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이 존재하거나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 : Y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 건분주택 방문 청약신청자(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장기복무 군인(10년 이상 : 기타지역 / 25년 이상 : 해당지역)이 청약 신청 시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 또는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③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처분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④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이천 부발역 에피트'는 84㎡ 단일 공급이므로 해당 단독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불가
  -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⑥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를 납부한 분을 포함합니다.
  -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소득세 납부내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 ※ 단,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신청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불가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 ① 소득구분 ▶ ② 지역 ▶ ③ 추첨 ]

① 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 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② 지역
  - 해당지역(이천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잔여물량 시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③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녀기준

- 임신·입양 :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확인 시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8.0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구분	소득금액 (단위 : 원)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15%) / 우선공급 (35%)	130% 이하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신생아 일반공급 (5%) / 일반공급 (15%)	130% 초과 ~ 160% 이하	9,105,863 ~ 11,207,214	10,723,008 ~ 13,197,547	11,407,593 ~ 14,040,114	12,432,268 ~ 15,301,251	13,456,942 ~ 16,562,389	14,481,616 ~ 17,823,526	
추첨 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재자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 ~	13,197,548 ~	14,040,115 ~	15,301,252 ~	16,562,390 ~	17,823,527 ~
	1인 가구	160% 이하	~ 11,207,214	~ 13,197,547	~ 14,040,114	~ 15,301,251	~ 16,562,389	~ 17,823,526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 ~	13,197,548 ~	14,040,115 ~	15,301,252 ~	16,562,390 ~	17,823,527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 -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자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
사업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구분	금액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r>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li> <li>※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임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홈택스)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① 재직증명서 ②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홈택스)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 등록증명	① 세무서(홈택스) ② 세무서(홈택스)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② 사업자 등록증명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①/② 세무서(홈택스)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③ 재직증명서 ④ 사업자 등록증명 ⑤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① ~ ③ 해당직장 ④ 세무서 ⑤ 등기소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① 위촉 및 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 세무서
전년도 또는 올해 소득이 있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 2023.01.01.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자		전년도 1월 1일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상기 내용 참조  ① 세무서(홈택스)

-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확인사항 및 발급처
과거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 서류	- 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홈택스) ] -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0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인,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 서류	- 근로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해당직장 -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전일 경우 (일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서"(단, 신고서상 금액이 - 또는 0일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이력 불인정)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인,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지급조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	상기 공통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

※ 청약 당해연도를 포함 과거 5개 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 적용례 ] 2015, 2017, 2019, 2022, 2024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생애최초 특별공급 부동산 소유현황 입증서류 (소득기준 초과인 경우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생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및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아래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 부동산종합증명서 [소유 부동산이 주택과 토지의 경우] / 일사편리 (kras.go.kr) -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행정복지센터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행정복지센터 -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etax.seoul.go.kr) 이용안내' > 조회, 발급 >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www.wetax.co.kr)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 행정복지센터 ② 축산업 허가증 /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를하여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전체)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주기간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 : Y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소득증빙서류			
추가서류	복무확인서	청약자	10년 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군 복무기간 명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출산증명서 또는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청약자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생아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애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처 : 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주민등록번호 공개체크)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의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합니다.

※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장기복무 군인(10년 이상 : 기타지역 / 25년 이상 : 해당지역)이 청약 신청 시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V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일반공급 신청자격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②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합니다.)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	이천시 또는 경기도 거주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 저축 관련 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전환 이후 청약예금 ▶ 청약저축 재전환 불가)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지역/기타지역 전입일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전입 시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1순위 가점제 :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 - 1순위 추첨제 : [ ① 지역 ▶ ② 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 추첨 ]	- 2순위 : [ ① 지역 ▶ ② 추첨 ]
---	-------------------------

- ① 지역
  - 해당지역(이천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잔여물량 시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② 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이천 부발역 에피트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84A/B/C/D	40%	60%

• 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추첨

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합니다.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합니다.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가 필요합니다.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p>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합니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4) 확인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p>
<p>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합니다.) 및 해외에 체류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만 30세 미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p>
<p>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p>
<p>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서류 (필수)	주민등록표등본(전체)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및 세대구성원과의 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 여부 확인 및 만 30세 미만 나이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주기간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 : Y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추가서류	복무확인서	청약자	10년 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군 복무 기간 명시)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이 존재하거나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당첨사실 확인서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 : Y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 : Y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장기복무 군인(10년 이상 : 기타지역 / 25년 이상 : 해당지역)이 청약 신청 시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안내
  - 청약홈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VI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 (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합니다.)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li> </ul>			
	<table border="1"> <tr> <td>인감증명 방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분) ※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r> <td>본인서명 확인방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able>	인감증명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분) ※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본인서명 확인방식
인감증명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분) ※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본인서명 확인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회피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차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 <li>-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차 제공 요구</li> </ul>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생존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li> <li>-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li> <li>-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li> </ul>
당첨자발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 조회기간 : 2024.08.27.(화) ~ 2024.09.05.(목) (10일간)</li> <li>- 조회기간(10일)이 경과더라도 ①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 청약통장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li>-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li> <li>-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문자

Ⅶ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계약 체결 일정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구분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 일정/장소 변경 시 SMS, 홈페이지를 통한 재안내 예정)	계약기간	
제출기한	2024.08.29.(목)~2024.08.31.(토)	2024.09.07.(토)~2024.09.09.(월)	
대상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 ※ 예비입주자 추첨/계약기간은 추후 별도 통보	
제출장소	건본주택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82-5)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예비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서류제출 불가 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li> <li>•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불가한 당첨자의 경우 건본주택으로 반드시 연락바랍니다.</li> <li>•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li> <li>•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li> </ul>		
	부적격 통보를 받은 세대의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건물확인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자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단신부임 입증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 시 생업사정 불인정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청약자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분)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대리인 계약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VIII

참고사항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9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를 준용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도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사업주체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건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익제기 및 그 밖의 인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익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금융권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격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취급기관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계약금 납부 이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담보대출 유무,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주택소유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도금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기준으로 안내하는 것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정부정책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시행위탁자가 중도금대출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개시일의 이자정산일(단, 이자정산일 이전에 입주개시가 될 경우, 입주개시 전월의 이자정산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자정산일”이라 한다)까지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이자정산일 이후부터 계약자는 입주 시 시행위탁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시행위탁자가 대납했던 중도금대출 이자 전액을 시행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선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이자정산일 이후부터 계약자는 입주 시 시행위탁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시행위탁자가 대납했던 중도금대출 이자 전액을 시행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시행위탁자가 대납한 이자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도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입주예정일

-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임시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 포함)를 득하고 입주 할 시,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해야 하며, 총 공급대금의 10%의 대금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하며, 해당기간 이후 납입시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율(공급계약서에 명시된)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보된 10%의 금액을 먼저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입주증발급, 키볼출 포함) 이후 분양권의 전매(공동명의 변경 포함)는 불가하오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 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사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감재재 목록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내란, 전쟁,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대·복리시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①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운영원후계실
  - ②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커뮤니티시설 (피트니스클럽, GX룸, 샤워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주민운동시설 1개소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지하 1층은 2.7m이하, 지하 2층~4층은 2.3m이상입니다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경 메르칼리 등급 VII-0.197g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관련 사항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영유아보육법」 제12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9조의3,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설치 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이천시와 체결할 예정이나,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 또는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별도의 의결, 절차 진행 없이 협약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포괄 승계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포괄 승계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협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내 “협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지원한 리모델링 공사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반납할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단지 관리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지자체 또는 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에게 전기, 수도, 가스 등 단지 간선 시설 사용에 따른 개별 사용료(인건비, 승강기 유지비, 용역비 등 고용관리비 제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관할 지자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고, 해당 공사 및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개원 시기는 입주 개시 이후 다소 지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에 출입할 수 있고, 임시 주차가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관련 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주공시설)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의무 설치 단지입니다.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이천시청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 까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이천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 단,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며 “주택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검사 신청 전 까지 설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 관련 사전 안내 및 수요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계획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계획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계획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 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전용보일러 (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 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녹색건축 예비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이천 부발역 에피트 24-00-11-0595

2024년 06월 25일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2024년 06월 25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2024년 06월 05일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단위 : 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4-101-0008300	263,963,765,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약관 제1조 )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 보증약관 제2조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 보증약관 제4조 )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문의 바랍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 본 공급물건은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주)빌더스개발원,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및 시공사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하고 분양계약(공급계약)의 체결로써 다음 사항 전부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및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빌더스개발원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바,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부해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등의 사유로 시행위탁자인 (주)빌더스개발원과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 해지되는 경우, 분양계약(공급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본 사업상 시행자(사업주체)의 지위에 기한 시행수탁자의 모든 행위 및 권리와 의무는 시행위탁자인 (주)빌더스개발원에게 별도의 조치 없이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시공사인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 교체(건축물브랜드, 명칭 변경 포함)시 수분양자는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단, 시공사는 시공상 하자에 한정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
- 신탁계약으로 입금된 분양수입금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에 근거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확인한다.
-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협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협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본 내용은 본 공고 모든 내용에 우선하며,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 공급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내·외장 자재의 수급여건, 현장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사전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관련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은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에게 현존하는 분양계약에 관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부담하며)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기타 매도인으로서의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인 (주)빌더스개발원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감리금액은 인허가 및 실제공사 진행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상 호	(주)원중합엔지니어링	(주)한성기술단	(주)지에이치이엔에이	(주)지에이치이엔에이
금 액	3,639,979,420	850,616,100	847,000,000	338,800,000

사업주체 현황

구 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분양대행사
상 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주)빌더스개발원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	(주)미래인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30층 11호(구의동, 테크노-마트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신천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8, 4층(서초동, 서초동아타워)
등록번호	110111-7125720	110111-6719582	110111-0274699	110111-1299901

X

유의사항

설계 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 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p>☐ 공통사항</p> <p>일반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주택형 신청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li> <li>•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 및 지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정산이 필요한 면적증감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하며,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li> <li>• 공동주택의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각 세대별 공급금액이 상이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아파트,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일부 시설을 구조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은 불가합니다.</li> <li>•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li> <li>•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해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자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자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li> <li>•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li> <li>•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li> <li>•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li> <li>•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브랜드, 디자인 등은 향후 회사의 브랜드 관리 정책에 따라 적용이 결정됩니다. 이에 본 사업장 건축물의 브랜드명, 디자인 및 색채 등은 현재 안내된 내용대로 유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li> <li>• 분양권에 대한 전매행위 시 분양권 매수자는 최초 계약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계약 취소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li> </ul>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허가도면과 실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건축물의 색채, 형태(외벽 및 축벽 줄눈, 저층부 및 출입구, 문주 디자인,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디자인, 부대복리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탑 구조물,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창호 크기 및 난간 형태 및 색상 포함), 패턴, 마감재, 경관조명과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 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은 고지 예정입니다.</li> <li>•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 아파트 배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조경면적 등), 각종 인쇄물상의 구획선, 아파트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거부 대지비율 면적을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고려한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li> <li>•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 위치 등)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지만, 인·허가 과정 및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입주민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소유권 확보 관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제3항 제28호에 의거 매도청구 진행 상황을 명기함.</li> <li>- 주택법 제22조(매도청구 등)에 의거 매도청구 대상 대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을 아미리 726-39번지(2023나22169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원소유자로부터 수원고법에서 승소판결(확정) 받았으며, 추가적으로 같은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가동기권자에게도 매도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단15775 소유권이전등기)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li> <li>- 또한,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추후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준공인가신청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거하여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의무 설치 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X. 기타 계약자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아파트 입주시점에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학교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li> <li>• 통학거리와 관련하여서는 청약 및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li> <li>•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아미초등학교입니다.</li> <li>• 중학교는 효양사동중학교(효양중학교, 사동중학교)에 해당됩니다.</li> <li>• 학교 배치 및 학군의 경우 관할 교육청의 정책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분양 상담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단지 및 주동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 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 도서 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등은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계법령에 따른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단지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체결 이후에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경사가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계약전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외곽 도로는 현지 여건에 따라 경사도 및 너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도로상 설치되는 전신주 및 각종 전선, 통신선 등으로 인하여 조망권이 침해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건축물의 각 동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단지 배치 및 동별,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일조량의 감소,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현상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재활용 분리수거공간, 음식을 쓰레기처리, 재활용 창고, 자전거 보관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 및 생활이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출입구, 부대 복리시설, 주차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출입부 문주 계획으로 인접동의 저층세대에 조망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의 배치 상 일부동의 저층세대 및 특정세대는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나 건본주택 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소음방지 대책으로 102동, 103동, 104동, 105동 경충대로-고속도로 진입부에 설치되는 방음벽에 의하여 저층 세대는 시야가 차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방음벽은 사업시행자에 의해 설치되며 방음벽의 유지관리 책임은 해당 관할청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li> <li>• 방음벽은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와 상관없이 설치 내용의 변경 및 설치여부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107동 주변에 설치 운영중인 버스정류장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바랍니다.</li> <li>• 105동, 106동, 107동, 하부에 기계실, 발전기실, DA 등이 위치하여 사용에 따른 소음, 진동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가 각 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냉난방 실외기 및 환기설비가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향후 입점 업체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세대 및 각 동의 저층부 인접세대는 필로티 및 중앙광장 등 공동개방공간을 사용하는 입주민에 의한 소음 및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세대에서는 단지 내 야간조명 효과, 야간 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D/A(설비 환기구), 탐라이트,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함은 공동주택용 총 4개소(101~102동 사이, 102동~103동 사이, 103동~104동 사이, 105동 후면),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용 1개소(105동 후면 공원인접)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보관소는 지하1층에 별도로 설치되며, 주거용 재활용품 보관고는 102동 지하1층 2개소, 비주거용 재활용품 보관고는 103동 지하1층 1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세대 위치 및 주동 출입구의 위치에 따라 이동거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 도로, 필로티 및 저층 인접세대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시선간섭 등의 사생활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입주 시 단지 바닥감, 창호형태, 난간종류, 조명, 고층아파트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강기를 사용하여 이사하셔야 합니다.</li> <li>•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담장)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동별로 진입동선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전 단지 모형 및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여 주십시오.</li> <li>• 단지 내 비상차로는 시공시 및 소방준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등)의 통행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비상차량 정차공간 및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부위에는 식재 및 차폐 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단지 및  
주동계획

- 본 단지의 동 표시, 동 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등급 VII-0.197g 입니다.
- 아파트를 포함한 본 건축물의 외관은 관찰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 명칭,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내부에는 석재, 석재뿔칠, 도장 등이 혼용되어 시공됩니다.
- 우편물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 택배함 설치 위치는 지하 1층이며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축벽, 발코니양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축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승강기 홀 공용부 창의 경우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공용부 창호의 제작사 및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의 높이와 형태는 고도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축벽 로고의 위치 및 개소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 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동 및 외부 시설의 외관/색채 등의 공용부 설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개인 취향에 따라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강간재 축벽 조명(103동), 축벽 BI조명(103동) 및 옥탑 BI 조명(107동)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에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탑층 및 피난안전구역에 소화수조 및 펌프가 설치되어 최상층 및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적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01~105동의 지붕층에 옥탑의 소화수조 점검을 위한 외부계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106동에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오피스텔의 유입공기 배출을 위한 수직풍도가 추가로 설치되며,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공원, 완충녹지가 단지와 인접해 조성될 예정이며, 어린이공원(예정) 시설이용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접세대에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의 어린이공원(예정), 완충녹지(예정)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행정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도로, 비상차로의 폭, 경계석 위치, 형태, 회차동선, 회전반경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에는 경계웬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높이, 형태,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와 내부에는 레벨 차이로 옹벽, 조경석 쌓기 등의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구간, 높이, 형태,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계단과 경사로의 레벨, 형태, 마감, 난간 높이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설비 환기구)의 노출이 있으며, 보행공간에 인접한 경우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성되는 공개공지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대지안의 공지 구간으로 외부인의 이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성되는 공개공지의 디자인, 식재 배치, 시설물, 포장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형태, 색채, 마감, 규격,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목의 수종, 규격, 식재 위치는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 일조와 조망 간섭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차량 활동구역 및 에어매트 주변에는 소방구조활동을 위하여 수목 식재가 제한되며, 준공시 소방점검 의견에 따라 식재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형태, 색채, 마감, 패턴, 위치, 규격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102동 후면에 옥외 주민운동시설 1개소가 위치하며, 일부 세대에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중앙부 어린이놀이터 포장은 인허가 조건에 따라 투수성포장재가 반영되어 이용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104동, 105동 사이에 수경시설(비오름 등)이 1개소 위치하며, 일부 세대에 소음, 악취, 미생물발생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비오름 등)은 인계 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 주체의 의무이며, 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수, 미생물 발생 등에 대하여 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비오름 등)의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유지·관리·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의 설치 규모, 위치 등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부대시설, 옥외계단 등의 상부에 옥상조경이 조성될 수 있으며,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유무, 수목, 시설물, 포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육/수생비오름이 각 1개소씩 조성될 수 있으며,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유무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비오름 등), 놀이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관리시설, 옥상조경 등의 조경공간 인접세대에는 소음, 진동, 시야 간섭, 미생물발생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인 개인의 취향이나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 설치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견본주택 내 모형을 통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보안등, 불라드등, 수목투사등, 포인트조명 등 각종 외부 경관조명의 인접세대는 빛의 산란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각종 외부 경관조명은 인허가의견과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형태,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인 개인의 의견에 따라 추가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인근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조경 수목, 시설물, 포장의 추가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후 조경 수목, 시설물, 포장 등의 유지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인에게 있으며,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수목 고사, 시설물 및 포장의 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에 도시가스 지역정압기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조망 등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단지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시설로서 아파트의 주차장은 968대로 구성되며, 업무시설 67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주차장은 95대로 별도 계획합니다.</li> <li>•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지하1층 주차장에 설치(아파트 : 급속 10대, 완속 39대, 비주거 : 급속 2대, 완속 6대)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금형 콘센트가 설치되는 일부 주차면은 일반 주차면과 공용으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li> <li>• 본 단지의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102동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저층 세대는 진입램프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지하 3층, 지하 4층 주차장의 차로의 높이는 2.3m로,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지상의 비상차로 등을 이용하여 각 동별 접근이 이뤄지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지하 1층의 주차장 주출입구는 법적기준에 따라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7M 이하의 택배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지하2층 이하의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106동, 107동은 지하1층 하역공간에서 택배차량 정차 후 작업이 가능합니다.</li> <li>• 배치 여건에 따라 일부 경우 주차 후 해당 동의 승강기 홀 접근의 이동거리가 멀거나 해당 동의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계약전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 설계여건에 따라 주차장 내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일부 주차면은 기둥과 간섭으로 운전석 및 보조석 승하차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ul>
부대 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복리시설은 공간만 제공되며, 집기, 비품, 운용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등은 입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용하여야 합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통신시설물, 놀이 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 시설, 수목 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 방지 열선 시설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 보수 ·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 등)은 사업주체가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운용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가 직접 운용하여야 하며, 계약자(입주자)의 추가적인 요구에 의한 집기 및 비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li> <li>•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 등)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li> <li>• 106동, 107동 하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지붕의 조경 공간은 주민공동시설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향후 입점 업종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수분양자 혹은 이용객의 주차장 이용을 위한 단지 내 진입 및 이용이 불가피하며, 향후 분쟁발생 시 입주민과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가 관리규약에 의해 분쟁사항을 조정해야 합니다.</li> <li>•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용역원후계실</li> <li>②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커뮤니티시설 (피트니스클럽, GX룸, 샤워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주민운동시설 1개소</li> </ul> </li> <li>•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계획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 106동, 107동 하부 복합시설(지하 1층~지상 2층)</li> <li>- 커뮤니티시설 : 106동 하부 복합시설(지상 2층, 별도구획)</li> <li>- 작은도서관 : 104동 하부 지상1층</li> <li>- 펌프실,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 주거용(105동 인근 지하 4층), 비주거용(107동 인근 지하 3층, 지하 2층), 빗물저류조(101동 지하 3층)</li> <li>- 주차장 램프 : 102동, 103동 전면</li> <li>- 어린이집, 경로당 : 어린이집(105동 하부 지상 1층), 경로당(104동 하부 지상 1층)</li> <li>-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 어린이놀이터(103동 전면), 주민운동시설 102동 후면)</li> </ul> </li> <li>• 커뮤니티시설은 지하 1층 주차장 및 지상 1층의 주민공동시설용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106동, 107동은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을 통해서 가능)</li> <li>•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입점 업체는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미확정이며, 추후 개별 분양으로 운영되는 입점업종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동 공용부 엘리베이터 홀의 지하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1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되며, 마감재의 품질, 품귀 시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각 실의 천장고, 창호의 크기 및 위치, 기능,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내외부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설계상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시설별 해당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은 각 해당 시설의 기타공용면적에 분배되었습니다.</li> <li>• 커뮤니티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li> <li>•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됩니다.</li> <li>• 시공사는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li> <li>•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합니다.</li> <li>• 부대시설 천장 내 기계설비 배관 및 덕트, 소방 및 전기 트레이 등으로 유효 천장고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li> <li>• 지하 1층 샤워실(남,여)은 외부 자전거 시설이용에 대한 부대시설로 외부인의 출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내용
세대 평면, 가구 및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 미건립세대 84B, 84C, 940A, 1110A이며, 마감자재 사양의 경우, 84C는 84A를 따르고 84B, 940A, 1110A의 경우 84D를 따릅니다. 또한 평면에 따라 가구의 규격과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단위의 천장고는 2,300mm(침실 기준)이며,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의 부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비확장 세대는 확장세대 대비하여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 제공량이 상이하므로 카탈로그 상 이미지를 상세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비확장 세대는 외부창호가 설치 되지 않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만 시공됩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택형/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li> <li>•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li> <li>•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합니다. 또한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 주십시오.</li> <li>•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li> <li>• 또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경량/중량충격을 차단 성능 등급은 표준실험동 등에서 관련기준 절차에 따른 등급으로 실제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및 절차(사후확인제도, '22.8.4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건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확인방법 준용)에 따라 확인한 성능등급과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li> <li>•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불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1(다용도실) 창호는 소방활동을 위한 진입 및 대피구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구간에 물건의 적치가 금지됩니다.</li> <li>•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발코니 공간은 관련 법규에 따라 물건의 적치가 금지됩니다.</li> <li>• 하향식 피난구는 누수 방지를 위해 바닥 마감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보안 기능이 있어 개폐시 해당세대와 하부세대에 경보 및 월패드에 연동되며 하부세대에서는 바로 위 세대의 피난구를 열 수 없습니다.</li> <li>• 세대내 하향식 피난구는 필로티 상부세대를 포함한 최하층에는 설치되지 않으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시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li> <li>•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발코니1(다용도실) 내 세탁기 설치공간은 가로 90cm, 세로 90cm 규격으로 확보하여 해당 규격 이하의 세탁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일부 타입의 경우 세탁기 설치 시 세탁기 용량에 따라 다용도실 도어를 탈거해야 합니다.</li> <li>• 주방가구,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공사 시 발코니/실외기실/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허용범위 이내의 오차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li> <li>• 욕실 출입문(부부/공용)은 본공사 시 PVC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li> <li>• 욕실은 시스템 욕실로 시공됩니다.</li> <li>•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여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 해당 변색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li> <li>•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복도 또는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공사 시 마루자재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의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li> <li>• 거실 아트월, 욕실, 주방 등 타일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견본주택과 동일한 패턴으로 설치되지 않으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li> <li>• 현관 디딤판/결레반이, 욕실 뒷선반, 주방 상판 및 벽체 등에 사용된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패턴, 색상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나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공장생산 자재(타일, 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li> <li>• 엔지니어드 스톤과 인조대리석 등은 자재특성상 본공사 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으며, 본공사시 패턴 및 색상 등이 견본주택 설치세대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타일/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li> <li>•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무관합니다.</li> <li>• 세대 내 바닥재인 마루바닥재의 구성 부재 중 심재(코어)의 재료는 내수합판 또는 고밀도 섬유판이 사용됩니다.</li> <li>• 본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li> <li>• 본공사 시 천장들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li> <li>• 본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 코킹 두께, 타일 메지, 색상 등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발코니 외벽, 축벽, 세대간벽은 발코니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li> <li>•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내 커튼박스 길이는 천장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공사 시 욕실 천장에 급수급탕분배기와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ul>

<p>세대 평면, 가구 및 마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 금속도어(현관 방화문) 및 목창호, PL창호의 문짝,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가구류(시스템 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li> <li>•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냉장고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며 냉장고 뒤쪽 벽체는 벽지로 마감됩니다.</li> <li>• 각 단위세대 내부에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글라스는 유리 특성상 조영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li> <li>• 각 단위세대 목문 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시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li> <li>• 현관 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형태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현관 도어폰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타입에 따라 침실 창호 크기가 다르게 설계 되었습니다.</li> <li>• 주방 상판 싱크대 하부에 설치되는 물끓기 흡은 분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길이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제품,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은 폭, 깊이,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탁기 크기로 인한 세탁실 출입 등”</li> </ul>
<p>창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창호의 프레임, 색상, 형태, 개구부의 크기, 하드웨어, 유리 사양 등은 성능개선, 안정성 검토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및 제조사는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 방향, 색상, 형태가 분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창호 프레임 접합 등에 따라 실내에서 프레임 사이에 줄눈이 보일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외측 창호에 방충망이 설치되며, 내측(분합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각 세대 거실 및 발코니2(침실1 발코니) 외부창호는 철제 난간이 설치되며, 형태, 색상, 높이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확장시 확장부분의 외부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분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p>공용기계 전기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에 의거 단지 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해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안테나 설치 예정 위치 : 옥상층(102동, 106동) - 중계 장치 설치 예정 위치 : 옥상층(102동, 106동) / 지하층(지하1,2,3층 헬름#7)</li> <li>•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CCTV는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수량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CTV 촬영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방법과 안전, 편의성을 위해 설치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내 내부에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지상 개폐기, 패드, 전주, 변압기, 맨홀 등)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맨홀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특정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 침해 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고, 시설물의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일부 동 및 일부 층은 주동 측벽에 낙뢰 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위세대 평면 배치와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위치 등을 확인하여 주시고,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임의 사용에 의한 파손의 복구 비용은 원인가 부담의 원칙을 따릅니다.)</li> <li>• 엘리베이터 사용 시, 이사 세대의 전용 이용 또는 일부 시간대 혼잡으로 인하여, 대기시간 지연 및 사용 불가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는 준공 전 일정 기간 동안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인수인계 후 운행으로 인한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의 속도, 인승, 설치 수량 등은 각 동의 층수 및 세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 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인허가 내용과 다르게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동 등의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우수조 등이 설치되어 장비의 정기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배연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출입구, 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 등의 D.A, 부대시설의 실외기 시설,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 등에 의해 일부 특정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및 환경권 침해 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지하 주차장 내에 전기차충전설비가 계획되어 있으나 인허가 사항이나 주차장의 구조 등에 따라 위치 등이 계획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전기차충전설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차 대수에 전기차충전구획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주차면은 실제 주차 용도에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설치된 시설물(전기차 충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경관조명, 옥외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 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 방지 열선 시설, 제습장치, 냉난방기,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홈 서비스인 터치 에이치엘(touchHL)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ul>

<p>공용기계 전기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동 상부(옥상, 외벽 등)는 의장용 구조물, 경관조명, 설비 통기 배관, 발전기 연도, 위성 안테나, 공정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 피뢰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조망 간섭, 야간조명의 영향, 눈부심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해 일부 특정 세대는 침해를 받아 생활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으며, 설치 용량 및 수선 감도 등에 따라 위치, 개소 및 수량이 변경되는 사항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지하 주차장 상부는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의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무인택배함 설치 위치 및 수량은 인허가 내용 및 시공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무인택배함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복도 등의 천장 내부 공간이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관리사무소,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실내 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은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li> </ul>
<p>세대기계 전기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시공되며, 개별적인 위치 변경 요청은 불가합니다.</li> <li>• 세대 분전반(「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설치)과 세대 통신 단자함(「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별표 3의 주) 3」에 의거 세대단자함은 주변의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의해 운영과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침수 및 결로 발생의 우려가 없는 노출된 장소(신발장, 세탁실, 베란다, 발코니 이외의 장소)에 설치)은 견본주택에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공사 과정에서 위치나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하여야 합니다.</li> <li>• 거실 벽면에 벽걸이 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 안내서의 유의 사항을 확인 바랍니다.</li> <li>• 세대 거실과 각 침실에 설치되는 통합스위치는 조명기구 점등과 소등, 대기전력 차단, 난방 온도조절의 기능이 통합된 제품으로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전기 마감재(세대 분전반, 세대 통신 단자함, 월패드, 조명기구, 배선기구, 콘센트, 통합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수량 및 사양은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인덕션, 하이브리드 등 전기쿡탑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하는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세대 내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설비 및 스마트홈 IoT 모바일 서비스인 터치에이치엘(touchHL)을 이용하여 방문자 확인, 가스밸브제어, 일괄소등제어, 엘리베이터 호출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복도 및 세대 전유 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2(침실1 발코니)에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며, 별도의 조명기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단위세대 조명기구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단종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형태 및 모양 포함)</li> <li>• 일반가구, 주방가구, 시스템가구 등에 설치되는 인테리어 조명은 일괄소등이 불가능하며, 추후 이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세대 분전반의 전원 구성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하며,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li> <li>• 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 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수량,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에 설치되는 급수, 급탕 분배기는 유지관리를 위해 본 공사시 설치충수 또는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홍통, 설비 및 전기 각종 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배수구, 수전 및 액세서리류 등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연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부부욕실은 바닥난방이 설치됩니다 (양변기, 샤워부스 내부는 제외 / 공용욕실은 바닥난방 제외)</li> <li>• 싱크대 하부의 가구 디자인은 설비기기(온수분배기 등)가 설치됨에 따라 견본주택 사양과 내부 폭 가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가스쿡탑 주변 주방 상판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용 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가스배관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며 레인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을 준수하여 설치합니다.</li> <li>• 세대 발코니3(하향식 피난구 공간) 내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 시 하부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임의로 덮개 개방시 하부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 관련 경보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세대당 1개소 설치되며 위,아래층 교차 시공되며 시공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하향식 피난구실에는 법정 소방시설인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화재 등 유사시에는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며, 피난사다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내부 단차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에는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자체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에는 관계법령 준수로 인한 배관 및 스프링클러 헤드가 노출되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 위치와 개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각종 설비배관의 노출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는 비난방구간으로 설치되는 수전 및 배수배관, 스프링클러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해야 합니다.</li> <li>•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에 설치되는 환기장치의 환기덕트 및 주방, 욕실 배기덕트 내부에 실내외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세대기계 전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기 설비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세대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환기설비가 실외기실 천장 상부에 노출로 설치 될 예정(마감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이며, 이는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등이 다소 발생합니다.</li> <li>• 84B, 84D타입은 세대 환기설비에 따른 급배기 덕트가 다용도실 상부에 노출되어 설치되며 이는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 주방 배기 및 욕실 배기는 당해층 직배기로 설치되며, 주위 환경여건에 따라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으며 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타입은 욕실 직배기에 따른 덕트 및 배기구가 침실구간에 설치됨에 따라 커튼박스의 깊이나 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 및 덕트로 인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깊이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기본 에어컨 매립배관은 안방(벽걸이 에어컨용), 거실(스탠드 에어컨용) 2개소에 설치되며,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시에는 제외됩니다.</li> <li>•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	--

■ 견본주택, 홍보물

구분	내용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에는 84A, 84D 타입의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 84A, 84D 외 견본주택 미건립 주택형 84B, 84C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옵션의 형태 등은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li> <li>•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식재, 경관연출 등)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차보도 포장, 식재, 시설물의 마감 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을 포함하여 주변환경과 부지 내 계획고 변경에 따른 고저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의 마감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에는 인허가청에 제출된 마감재리스트에 따라 시공됩니다.</li> <li>•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선택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li> <li>•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 안방 비확장 발코니에 설치된 바닥마감재 및 가구, 소품 등은 연출용으로 설치된 전시용 제품으로, 본공사시 제공되지 않으며 안방발코니는 물쓰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바닥 배수구 및 타일마감(실외기실 바닥마감과 동일한 바닥타일)이 기본설치됩니다. 또한 발코니는 단열 및 바닥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공간이며, 안방과 발코니 사이에는 본공사시 분합문 설치됩니다.</li> <li>•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출통과 수전의 위치, 환기디퓨저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와 위치/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됩니다.</li> <li>• 단지모형의 조명 및 식재, 시설물, 환기구(DA),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등은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침실 벽체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공사 시 냉방전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추가선택품목으로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류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온도 조절기,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 사양은 동등 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전시된 건조기는 전기식으로, 가스식 건조기 설치를 위한 연도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스식 설치 불가) ※ 건조기는 전시를 위한 것으로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표시된 가스 배관 위치는 본 공사 시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상부장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모형의 경관 조명 및 입출차 차단기는 연출된 것으로 실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류(시스템가구 포함)의 바디 및 도어 마감재는 본공사시 동등이상 제품이 설치될수 있습니다.</li> </ul>

분양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십시오.</li> <li>분양대상물의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이 삽입된 분양 관련 각종 홍보물(팜플렛, 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이나 개발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복리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li> <li>각종 광고 및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단지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li> <li>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설계도서와 모형, CG 등 분양광고물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시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시공됩니다.</li> </ul>
-----------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제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현장 주소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37-6번지 일원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82-5번지
	분양문의	031-632-5100
	공식 홈페이지	<a href="https://brand.hldni.com/icheonbubal/">https://brand.hldni.com/icheonbubal/</a>
		위탁사 주식회사 빌더스개발원 / 수탁사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시공사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 /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미래인